

의정부지방법원 2023. 4. 28 선고 2021가단14225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륙아주

담당변호사 윤선웅

피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구본우

변 론 종 결 2023. 3. 17.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1. 주식회사 B가 피고에게 한 2020. 9. 1.자 131,300,000원의 변제행위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8년 7월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양도하였고, 2020년 7월경 이를 원고 산하 파주세무서장에게 통지하였다.

나. 원고는 2020. 8. 31. 위와 같은 채권양도 및 통지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C이 아닌 소외 회사 명의 계좌로 부가가치세 환급금 1,037,079,380원(이하 ‘이 사건 환급금’이라 한다)을 반환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20. 9. 1. 이 사건 환급금에서 공탁금상환 명목으로 1억 1,000만 원, 접대비대체 명목으로 230만 원, D 투자금반환 명목으로 1,000만 원, 가수금상환 명목으로 900만 원을 사내이사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각 송금하였다(이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금원 송금행위를 통틀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라 하고,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로부터 피고가 지급받은 금원 합계 1억 3,130만 원을 통틀어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

라.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환급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8209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22. 10. 21.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환급금 및 이에 대하여 2020. 8. 31.부터 2022. 1.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 E의 배우자인 F와 피고는 공모하여 소외 회사의 계좌로 착오송금된 이 사건 환급금을 임의로 소비하였다는 내용의 범죄사실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으로 기소되어 재판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7, 10, 12, 17호증, 을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있었던 2020. 9. 1. 당시 소외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금 상당의 부당이득금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인정여부

1) 사해행위 판단의 기준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개의 재산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각 행위별로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을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그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행위의 상대방의 동일성, 각 재산행위의 시간적 근접성, 채무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의 동기 내지 기회의 동일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15387 판결).

살피건대,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2020. 9. 1.에 모두 피고를 상대방으로 이루어졌으므로, 그 일련의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별로 사해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일괄하여 전체로서 사해성이 있는지를 판단한다.

2) 소외 회사의 무자력 여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바, 채무자가 재산처분행위를 할 당시 그의 적극재산 중 부동산과 채권이 있어 그 재산의 합계가 채권자의 채권액을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그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이를 제외하여야 할 것이고, 그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그것이 용이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정하여 그것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등 참조).

갑 제5,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가 이루어진 2020. 9. 1. 당시 부채총계가 자산총계를 초과하는 상태였음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가 소외 회사의 적극재산으로 주장하는 G 자동차매매단지 분양미수금 채권 등은 소외 회사가 2020. 9. 1. 기준 이를 보유하고 있었다거나 나아가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능성이 있어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적극재산으로 고려하지 아니한다.

3) 사해행위 인정여부에 대한 판단

채무자가 채무초과의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의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하는 결과가 되는 경우, 그 변제는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한 경우가 아닌 한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다62167 판결 참조).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하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갑제2, 8, 9, 12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로 보더라도, 이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인 F와 피고가 통모하여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소외 회사의 사해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①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이사는 E이나 실질적으로는 그의 배우자 F와 사내이사인 피고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 ②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할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이 사건 환급금은 2020. 8. 31. 소외 회사의 계좌에 입금된 후 단 하루만에 모두 지출처리되었는데, 그 처리과정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경리직원 H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 피고의 지시에 따라 피고가 적어 준 이체목록(A4용지에 계좌, 이름, 금액 등을 기재)에 기재된 대로 이 사건 환급금에서 모두 송금처리를 한 것이었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③ 그 당시 피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직원 중 상당수는 이 사건 환급금은 C 내지 원고에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특히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 I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 피고와 경리직원에게 위 환급금을 지출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피고에게 위 이체목록에 기재된 것 중 I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채권과 I의 급여 부분은 송금하지 말아달라고 하여 I과 관련된 송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④ 피고의 공탁금반입채권이나 D(J)에 대한 투자금반환채권, 가수금채권, 접대비반환채권은 피고 명의의 계좌내역의 적요란에 일부 기재가 있는 것 이외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고, 위와 같은 채권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환급금이 입금된 다음날에 한꺼번에 변제를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 ⑤ 관련 형사사건에서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관하여 F의 동의가 있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였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 한편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 당시 소외 회사의 재산상태와 이 사건 환급금이 원고 내지 C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돈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2020. 9. 1.경부터 2021. 5. 28.경까지 소외 회사에 221,300,000원 상당을 송금하는 등 지속적인 자금조달을 하였음에도 위 돈을 돌려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하여 받은 돈 전부를 상환하였다고 볼 수 있어 취소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위과 같이 송금한 금원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를 통하여 받은 돈을 상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관련법리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써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써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판 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에 기하여 피고에게 지급된 이 사건 금원은 현재 피고에 의하여 소비되었거나 피고의 다른 재산과 혼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서 이 사건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지급행위는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31,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정